

PL3

학점은행제 이용 시 주의 사항



* 본 자료는 2014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, 이후의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(www.cb.or.kr)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리플렛 PDF파일 다운로드 경로 : 홈페이지 - 알림방 - 자료실 - 간행물

* '학점은행제 필수이해' 오리엔테이션 콘텐츠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있으니, 제도 이용 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1년/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

- 1년 동안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최대 42학점이며, 학기마다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.

연간 인정 제한학점	학기당 인정 제한학점
최대 42학점	최대 24학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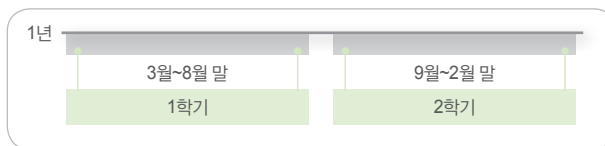
[1년/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임]

제한 (수업을 통한 방법)	제한 없음 (수업 이외의 방법)
평가인정학습과목	자격 취득
시간제등록	독학시험합격
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	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수교육
학점인정대상학교*	

* [학점인정대상학교]에서 이수한 학점은 동일한 연도/학기에 [평가인정학습과목], [시간제등록], [독학시험면제교육과정] 학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/1학기 인정 제한학점에 적용을 받음.

-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며, 학기는 아래와 같이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,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구분함.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(종강일)을 기준으로 함.

[학기의 구분]



2. 학위수여 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

- 학위취득 직전 학기에는 학기구분이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됨.

구분	마지막 학기
전기(2월) 학위수여예정자	9월 1일 ~ 다음해 1월 15일
후기(8월) 학위수여예정자	3월 1일 ~ 7월 15일

* 즉, 전기(2월)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, 후기(8월)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.

(예) 2015년 전기(2월) 학위수여예정자가 2015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음.

3.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

- [평가인정학습과목] 및 [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]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음.

구분	최대 인정 학점
학사학위 과정	105학점
전문사학위 과정	60학점 (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)

※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1개 교육훈련기관 최대 인정 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.
-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고등기술학교·첨양예술학교('14년 5월 현재)

4. [중복과목 및 대체과목]에 대한 학점인정

- [평가인정학습과목], [학점인정대상학교], [시간제등록], [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]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,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함.
- 중복과목 처리기준(1과목만 인정)
 - 과목명(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)이 동일한 과목
 -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'의'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
 - 문장 부호, 접속 조사 '와/과' 또는 부사 '및'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
 -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
 -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

[중복과목 예시]

구분	예시
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회계 입문 =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= 인터넷 이해
문장 부호와 특정 조사·부사를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S/W 활용 = SW 활용 EDPS = E.D.P.S 한국근·현대사 = 한국근현대사 가족상담 및 치료 = 가족상담·치료
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공실기 = 전공실기1 = 전공실기 I
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클라이언트/서버 프로그래밍 = C/S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= PS 콘크리트

※ 상기 기준은 중복과목에 대한 예시로서, 해당 기준 외에도 과목명 내 고유명사가 포함되거나,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,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,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.
※ 아동학(아동·가족 전공), 간호·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.

- 대체과목 처리기준(각각 인정)
 -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
 -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
 -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될 경우, 학습구분은 한 개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,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(단,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 교양 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).

[대체과목 예시]

구분	예시
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~이해 ≍ ~개론 ≍ ~입문 ≍ ~총론 ≍ ~원론 ~실험 ≍ ~실습 ~연구 ≍ ~탐구 컴퓨터 ≍ PC~ 전자상거래 ≍ E-BUSINESS 스포츠클 ≍ 운동 ≍ 체육~ 글로벌 ≍ 국제 ≍ 세계~
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서관학개론 ≍ 문헌정보학개론 전산기 ≍ 컴퓨터

5.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,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

- 학위연계: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
-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(2년제)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,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.
 - 8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,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혹은 학점을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 해야 함.
 - (예) 81학점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: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을 제외하거나, 1학점에 해당하는 학습과목이 없을 경우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을 절사할 수 있음.
 -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(평가인정학습과목, 시간제등록, 학위수여 전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)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.
 - ※ 단,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[자격], [독학학위제 시험합격], [중요무형 문화재] 학점은 학사학위 연계 시 인정가능함.

6. 기존 학위보유자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 추가 취득 시 주의사항

- 학점은행제로 타전공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
 -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7조 표준교육과정 규정에 따라, [표준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 3. 학점인정의 기준 - 다항]에 명시되어 있는대로,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이후에 이수한 학습경험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함. 따라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타전공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(단, 이전 학위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자격 취득, 중요무형문화재로 취득한 학점은 타전공 학위 연계 시 인정 가능함).
 - 학점은행제는 복수의 전공을 동시에 학습하여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이 불가함. 즉, 제 1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함.

7.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주의사항

- 정해진 학위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[학위신청]을 해야 함.
- 학위취득 이후, 학위취소는 불가함. (※ 단,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'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음.)
- 학위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인정받을 수 없음.

8.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발급 기준

- 학위수여 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자로서, 최소학점 이상을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발급함.
 - ※ 최소 인정 학점: 학사학위과정 100학점 이상 / 전문학사학위과정 40학점 이상
- 학위취득을 위해 부족한 학점에 대한 증빙이 되어야만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함.
 -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: 「과정이수 확인서」 (※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)
 - 자격: 「자격증 원본」, 또는 「자격취득확인서」 (※ 자격시험접수증 불가)
 - 시간제: 시간제 「성적증명서」

9. 학점은행제 간호·보건계열 전공 이용

- 해당 전공의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간호·보건계열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, 전공과목 수강이 가능함.
-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필수과목(간호학7과목, 보건학사4과목)은 반드시 평가인정학습과목으로 신규 이수해야 함.

10. 대학 재적(재학, 휴학)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

- 대학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(평가인정학습과목, 시간제등록,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)을 동시에 이수하거나, 재적 후 같은 해(혹은 학기)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1년(42학점)/1학기(24학점 이내) 인정 제한 학점 기준이 적용됨.
- 대학 재적(휴학)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음.



137-8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7(서초동 1365-23번지)
Tel. (국번없이) 1600-0400 | Fax. 02-3780-9850 | www.cb.or.kr